[붙임] 2015년 지역아동센터 평가Q&A안내

평가지표 2-3 관련 운영위원 구성 확인방법은 ?

A. (원칙) 운영위원 구성은 지자체 승인 후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승인관련 공문을 통하여 확인하며 현재시점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문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운영위원 보고와 승인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정사항) 2015년 평가지표 2-3 '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 에서 운영위원 구성은 구성여부만 확인되면 인정

나머지 평가는 평점기준에 따라 운영위원 명단 및 구성의 적절성, 운영위원회의 개최횟수, 심의보고사항 확인하여 평가

* 단, 지자체의 운영위원 승인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 종합평가에서 1점 감점(-1점)

평가지표 4-1 관련 아동기본정보 관리 중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구비는?

A. (원칙)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는 시설에서 구비하는 필수서류로서 아동별로 구비하고 있음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정비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 중앙지원단 공지사항 913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이용종결 정비 안내' 참조

따라서 시설에서 아동별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결정사항) 2015년 평가에서는 아동별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구비, 과거 지자체 승인공문(아동리스트 포함) 모두 인정하며, 평가시점까지 소급하여 구비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도 인정

* 2016년 평가부터는 모든 이용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사전에 반드시 구비하여야 인정 함